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ADR
- Focusing on Major Asian Countries -

김 상 찬**
Sang-Chan Kim

〈목 차〉

- I. 머리말
- II. 아시아 주요국가의 ADR제도
- III. 각국 ADR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IV. 맺음말

주제어 : 재판외분쟁해결제도, 비교법, 아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9일 한국중재학회주최 추계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종래에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해 왔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분야의 민사분쟁을 민사재판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UNCITRAL과 같은 국제기구나,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사법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체할 재판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관한 논의와 검토를 거듭하여 왔으며,¹⁾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1998년 연방ADR기본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등을 통하여 ADR의 이용촉진을 꾀하고 있으며,²⁾ 일본은 2004년 12월에 ADR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³⁾ 독일은 1999년 법원의 분쟁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ADR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ADR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⁴⁾ 이와 같은 선진 주요국가의 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의 ADR에 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⁵⁾ 특히 ADR제도가 가장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ADR제도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일본 제외)의 ADR제도의 개요와 ADR기관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오늘날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거래나 투자 등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해 국가의 분쟁해결에

- 1) 양병희,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민사소송」제1권, 한국민사소송학회, 1988, 411면 이하와, 동 “한국중재제도의 활성화방안” 「중재연구」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2, 4면 이하 참조.
- 2) 미국의 ADR에 관하여 소개한 논문으로,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5, 490면 이하 ; 김태한, “미국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중재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181면 이하 ; 허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ADR)”, 「민사판례연구」제14권, 민사판례연구회, 1992 등이 있다.
- 3) 이에 관하여 소개한 논문으로, 정영수, “일본의 ADR법에 관한 소개”, 「중앙법학」 제7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5.2 ;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5, 288면 이하 ; 김상찬, “일본의 ADR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127면 이하 등이 있다.
- 4) 독일의 ADR에 관하여 소개한 논문으로, 양병희, “독일에서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 「인권과 정의」215호, 대한변호사회, 1994.7 ; 양병희,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변호사화해제도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제1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8.1 등이 있다.
- 5) 대표적인 것으로,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제14집, 민사판례연구회, 1992 ; 양병희, “한국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2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8 ; 김상찬,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제16집, 한국법학회, 2004.11, 정선주, “ADR 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제11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5 ; 전병서 외,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연구보고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12. 등 다수가 있다.

관한 법이나 제도를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고는 아시아지역 주요국가들의 ADR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아울러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아시아 주요국가의 ADR제도

1. 중국

(1) ADR제도의 개요

중국의 ADR의 주류는 중재라고 해도 좋다. 특히 비즈니스분쟁에 있어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중심으로 하는 중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재비용은 소송비용보다도 높지만 중재접수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⁶⁾ 중국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1987.1.22). 중재기본법으로는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를 대상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이 1995.9.1.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중재판단을 받아도 결국 인민법원의 집행신청을 요구하므로(중재법 제62조),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측 당사자에게 후한 ‘지방보호주의’의 개선경향이 있다. 북경이나 상해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소송제도운용에의 신뢰감이 증가되고 있다.⁷⁾ 중국에서는 CIETAC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ADR’ 뿐으로, 이른바 ‘ad hoc ADR’은 없다고 해도 좋다. 그 외에 중국에서는 다양한 성(省), 자치구, 대규모의 직할시 등에 160여 지방중재위원회가 있다. 중재법에 기하여 각종 중재기구가 정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노동중재는 중재법의 규율 외에 있는 특수 ADR이다(중재법 제77조).

ADR조항을 포함한 거래계약은 약 10%정도로, 특히 중외합자계약(中外合資契約), 중외합작계약(中外合作契約) 및 중외동산매매계약에서 주로 보인다. 중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6) 외국인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나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히 고액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보다 중재가 선택되는 이유는, 지방보호주의와는 무관하고, 공평성이 담보되고, 법관보다 중재인 쪽이 비교적 고도의 법률 및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속하는 것과 사용언어가 중국어에 한정되지 않고 설외중재에서는 당사자는 외국변호사에게 대리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법관의 부패와 질의 저하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2년 3월에 신통일사법시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朱建林, “中國의 仲裁-花盛り”, 『國際商事法務』第29卷 第2號, 2001, 201面).

7) 중국에서는 재판과정에 지방정부가 간섭하는 관행이 있어, 소재지당사자가 아니면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지방보호주의’가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법관임용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북경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소송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중의합작경영기업법 및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의하여 기초되고 있는 중의동산매매모델계약에 있어서 장려되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법원조정(중국에서는 ‘調解’라고 한다)은 우리나라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상 화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변호사는 개인이 아니라 사무소 단위로 허가(사법부관할)를 받는다고 한다.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중국사회에 있어서의 법규범구조의 다층화도, 서서히 변경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인치’로부터 ‘법치’로 변하고 있다. WTO가입이 현실로 되고, 중국에 있어서의 ADR을 포함한 광의의 민사사법의 형편도 일부의 지역보호주의 등의 모순을 포함하여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에 의하여 ‘법치’를 지향한 법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⁸⁾

(2) 주요한 ADR기관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⁹⁾

CIETAC은 1956.4.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설립되어, 198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된 중재기관이다. 중국중재법을 근거로 독립된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 규칙개정에서 국내기업간 분쟁에 관해서도 CIETAC관할사항으로 하였다. CIETAC은 전국조직이 있으며 국제분쟁이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지역에 관계되는 분쟁 등을 관할한다.¹⁰⁾ CIETAC은 5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세계 45개국으로부터의 안건을 수리함과 동시에, 세계 130여 국가 및 지역에 중재결정을 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국제중재센터의 하나이다.¹¹⁾ 1990년에 상해와 深圳에 CIETAC 지회가 설립되었다.

CIETAC은 매년 800여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80건 정도가 중재판정부에서의 화해로 해결되고 있는데, 안건의 대부분은 무역, 승유, 합작관계이다. 중재정은 중재정이 구성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판정서에 명기된 기한 내에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2)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와 중국국제상회(CCOIC)가 공동으로 ‘調解中心’을 1987년에 설립한 기구로서,

8) 池田辰夫, “アジア・太平洋諸國におけるADR制度の現状と展望”, 「ADRの實際と理論Ⅱ」, 中央大學出版部, 2005, 218-219面 참조.

9) <http://www.CIETAC.org>

10) 江口拓哉, “中國의 國際商事仲裁規則의 2000年 改正에 關하여”, 「國際商事法務」第28卷 第11號, 2000, 1386面.

11) 재원은 독립재산이지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고, 직원은 약 40명, 26개국 약 490명이 중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 1/3은 외국중재인이다.

CCPIT조정센터로도 불리며, 상사 및 해상분쟁 등을 폭넓게 취급한다. 결론에 도달하는 기간은 평균 약 30-90일이고, 신청사건의 약 80%가 조정합의에 도달한다. 조정비용은 청구액이 높은 만큼 금액은 높지만 청구액에 대하여 비율은 낮게 되어 있다. 조정합의에 집행력은 없다. 조정위원은 당사자를 설득하여 중재계약을 체결시켜, 조정합의의 내용을 포함한 중재판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¹²⁾

3) 북경시중재위원회(BAC : Beijing Arbitration Commission)

BAC는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에 기초하여 북경시인민정부 허가에 의하여 1995.9.28.에 설립되었고,¹³⁾ 2001년 3월까지 1,421건을 수리하고 있어,¹⁴⁾ 1998년 이후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는 4건에 그치고 있어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중재사건으로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안건은 적고, 건축분쟁이 많다. 건축분쟁의 경우 우선 당사자 조정, 그리고 중재수리, 중재판정부에서 조정불성립, 중재심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건축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건축공사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업무제휴 된 전문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한다. 당사자의 의의가 있으면 감정기구는 중재판정부에서 설명하게 된다. on line중재는 서면성 요건과의 관계에서 의문이 있어 인정되지 않지만, 클레임 상담이나 중재정의 개정상황 열람 등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CIETAC이 국내안건에 관하여 수리할 수 없었던 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CIETAC과 차이가 없다. BAC의 쪽이 약간 중재비용이 싸며, 결심까지의 기간이 CIETAC보다 약간 짧게 걸린다고 한다.¹⁵⁾

4) 북경시노동쟁의중재위원회

일반 중재정은 비공개이지만, 노동중재는 공개되며, 심리에 사용되는 방도 법정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중재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노동분쟁에 관하여 노동중재 전치가 채용되고 있는 점, 따라서 중재로 들어가는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는 불필요한 점, 또한 중재판단에는 중심으로서의 구속력이 없고, 내용면에서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는 북경시노동사회보장국의 관리하에 있어서, 북경시내에 19개소가 설치되어 노동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에 의하여 임금이 결정되고

12) 池田辰夫, 前掲論文, 220面.

13) 위원회규칙은 중국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기하여 제정되고 있는데, 1999.2.25.에 개정되었다. 재원에 관해서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국가에 의한 보조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1999년부터는 완전히 독립채산으로 되어 있다. 정규스텝은 15명이지만 부정방지 등을 위하여 전원 1년계약에 의하여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14) 1995년 설립이후 수리건수는, 1995년 7건, 1996년 140건, 1997년 168건, 1998년 133건, 1999년 326건, 2000년 446건, 2001년 3월까지 누계 1,421건이 수리되어, 1,231건에 관하여 중심, 중심율 86.6%, 국외로부터의 수리건수는 약 1.5%, 전국수준에서 보면 수리건수는 많지만 深圳이 수리건수가 1위이다.

15) 池田辰夫, 前掲論文, 221面.

있었기 때문에 노동분쟁 건수가 적었지만, 최근의 시장경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수리건수가 증가되고 있다.¹⁶⁾

5) 법원 내의 ADR

인민법원에 의한 ‘조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하고, 조정합의는 법관 및 서기관에 의하여 서명되어 양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양당사자가 서명한 후 조정합의는 채무명이가 된다. 집행은 제1심법원이 행한다. 조정의 이용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조정합의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된다. 제1심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¹⁷⁾

2. 인도네시아

(1) ADR제도의 개요

ADR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법률은 1999년에 제정된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법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이 대표적이다. 동법은 UNCITRAL의 내용을 대폭 채용한 것으로 ADR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모든 중재절차는 18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 규정되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도 대상으로 한다.¹⁸⁾ 국제중재판단의 집행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정하고, 집행을 위해서는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의한 집행승인 재판(exequatur)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중재이다. 계약서의 대부분은 “분쟁은 우선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 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하는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있다.¹⁹⁾ 이 중재법은 전체 9개장 82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동법에서는 중재를 분쟁당사자 간에 문서로서 합의함으로써 일반법원이 아닌 곳에서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1항)²⁰⁾

인도네시아는 1999년부터 사법개혁이 시도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법권을 독립시키려 시도하고, 오랫동안의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ADR제도의 확대 및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²¹⁾ 인도네시아에서의 일본계 등 외국기업은

16) 동 위원회의 수리건수는, 1987년 72건, 1988년 85건, 1989년 107건, 1990년 150건, 1991년 112건, 1992년 230건, 1993년 401건, 1994년 1,043건, 1995년 1,584건, 1996년 1,185건, 1997년 2,653건, 1998년 3,450건, 1999년 5,234건, 2000년 7,48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 池田辰夫, 前掲論文, 221面.

18) 최환용, “인도네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7-29면 참조.

19) 池田辰夫, 前掲論文, 222面.

20) 최환용, 전제논문, 18면.

21) 상계논문, 28면.

재판 불신으로 ADR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웃나라인 싱가포르까지 가서 ADR을 이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용되는 배경의 하나이다.²²⁾

(2) 주요한 ADR 기관

1) 인도네시아전국중재평의회(BANI :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법원 외 ADR기관으로서 유일한 존재인 BANI는 1977.12.에 법률에 기하여 설립되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운영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 분쟁은 국내안건 및 국제상사안건이다.²³⁾ 대부분이 일반상거래이고, 건설, 보험, 운송, 금융 등의 분야의 분쟁이다. 건수는 연간 30건 전후이며, 대략 절반 정도가 건축분쟁이다. 약 50명의 등록이 있는 중재인, 조정인의 대부분은 변호사, 경제전문가, 기술자 등의 전문가이다. 사용언어는 인도네시아어이지만, 중재정의 허가가 있으면 영어도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조정은 30일, 중재는 180일의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등록,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된다. BANI의 제도 중에는 'Binding Opinion'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중재판정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쟁점에 관해서 판단하고 당해 판단이 구속력을 가진다.²⁴⁾

2) 인도네시아이슬람중재위원회(BAMUI : Badan Arbitrase Muamalar Indonesia)

1993.10.에 설립된 새로운 중재기관으로서, 이슬람교도간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중재기관이다. 이 기관 또한 일단 중재가 신청되면 구속력이 발생된다.

3) 인도네시아자본시장중재위원회(BAPMI : Badan Arbitrase Pasar Modal Indonesia)

자본시장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마지막으로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²⁵⁾

4)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ADR기관이 존재한다. 즉, 노동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노동분쟁해결위원회,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세평의회, 기업간 또는 기업에 대한 경쟁관련 분쟁의

22) 池田辰夫, 前掲論文 223面.

23) 조정비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중재비용은 청구액에 기한 요금표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24) 池田辰夫, 前掲論文 223面.

25) Hiknahanto Juwana,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Indonesia, IDE Asian Law Series No.21, IDE-JETRO, 2003, p.51.

해결을 위한 기업경쟁감독위원회 등이 그것이다.²⁶⁾ 법원내의 상설 ADR기관은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 제기 전에 상대교섭을 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확정 판결 후에도 집행완료까지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는 것도 좋다고 한다.

3. 싱가포르

(1) 사법부와 ADR제도의 개요

IT 선진국²⁷⁾ 싱가포르는 1994년법에 의하여 영국추밀원으로의 비상상고가 폐지되고, 오늘날에는 국내의 Court of Appeal이 최종심으로 되어 있다. High Court, 그리고 지방법원, 간이법원(소액법원) 등 각종 법원의 총칭인 Subordinate Court(하급법원)이 각각 제2심과 제1심이 된다. Court of Appeal과 High Court를 합하여 Supreme Court(고등법원)이라고 부른다.

소송, 그리고 IAC(노동중재법원) 및 하급법원에 있어서의 법원 내 ADR, 법원 외 ADR의 각 건수를 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평균은 각각 47,192건, 5,617건, 263건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사법우위 속에서 법원내 ADR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²⁸⁾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관이 강한데, Subordinate Court의 최근의 IT화에 계획, 싱가포르법률아카데미의 존재 등이 이를 상징한다.

2001.10.5, 싱가포르입법부는 신중재법을 가결하였다.²⁹⁾ 이것은 국내중재절차에 관한 중재법 제10장에 갈음하는 것이다. UNCITRAL모델법은 이미 1995년 이래 싱가포르에 있어서의 국제중재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신법도 이를 계수하여 모델법의 대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³⁰⁾

(2) 주요한 ADR기관

1)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1991.7.에 설립되어 주로 국제중재의 촉진에 관계하고 있다. 싱가포르법률아카데미 소속하에 있다. 이 아카데미는 대법원수석판사가 이사장을 맡고, 대법원 판사가 주된 멤버인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관제적 기관이다.

모든 당사분쟁을 대상으로 중재 및 조정(conciliation)을 행한다. 처리기간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도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계쟁액의 정도에 따라서는 2-3년을 요하는

26)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최환용, 전개논문, 23-28면 참조.

27) 싱가포르 대법원의 최신실비를 자랑하는 Technology Court와 하급법원의 e@dr이 이것을 상징한다.

28) 1998년은 약 4,000건 정도였던 데 비하여 2000년에는 8,000건을 넘고 있다.

29) 보고서의 전문은 <http://www.agc.gov.sg/publications/arbitration/arbitration.pdf> 참조.

30) 池田辰夫, 前掲論文 226面.

경우도 있다. 처리건수의 약 70%정도가 국제사건이다. 싱가포르의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중재판단은 싱가포르의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된다. 그 절차는 통상 3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비용은 다른 주요 국제도시에 비하면 싼 가격이라고 하며,³¹⁾ SIAC에서는 수수료의 반액을 선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²⁾

2) 싱가포르조정센터(SMC : Singapore Mediation Center)

1997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날 조정(mediation) 및 ADR절차의 운영과 촉진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SIAC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법률아카데미 하에 있으며 건물을 공유한다. 2명의 조정인에 의한 공동조정이 SMC의 통상의 방식이다. 양당사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중재판단에 의하여 합의내용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은 하루에 종료되며, 사건에 따라서는 2-3일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3일 이상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수료는 전액 선불이고, 계쟁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³³⁾ SMC의 조정에 붙여지는 건수는 연평균 175건정도이며, 조정성립율은 약 75%이다. SIAC과는 독립적인 관계이고, SMC에 있어서 조정되지 않은 안건이 SIAC로 들어가는 구도로는 될 수 없다.³⁴⁾

3) 제1차분쟁해결센터(Primary Dispute Resolution Center)

하급법원법에 기하여 1994년에 법원분쟁해결(CDR)로서 하급법원에서의 조정이 도입되어, 1995년에 법원조정센터가 설립되었다가 1999년에 제1차 분쟁해결센터로 명칭이 개정되고 동년에 인터넷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e@dr도 설립되었다.³⁵⁾ CDR은 1995년에는 사건수 1,113건, 조정 성립율이 89%에 이르고, 1999년에는 4,640건에 97%라는 경이적인 높은 성립율을 보이고 있다. 제1차분쟁처리센터된 이후의 분쟁처리건수는 2000년에 8,160건이다. 이용은 강제되지 않는다.³⁶⁾

31) 구체적으로는, 계쟁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계쟁액에 따라서 8단계로 나누고 있고, 계쟁액이 5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이면 중재비용은 계쟁액의 3%(단 최저 500싱가포르달러)이고, 계쟁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상승되며(단 비율은 감소), 계쟁액이 10,000,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경우는 750싱가포르달러 플러스 10,000,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계쟁액에 0.05%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32) 池田辰夫, 前掲論文 227面.

33) 계쟁액이 25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이면 1일 1당사자 당 750싱가포르달러, 250,000싱가포르달러 초과 1,00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이면 1,500싱가포르달러, 1,000,000싱가포르달러 초과 10,00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이면 2,000싱가포르달러, 10,000,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일 경우는 2,500싱가포르달러이다. 다만,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는 합계로 1일 9,000싱가포르달러를 넘는 경우는 없다. 그 외 장소대금 및 사무실 경비로서 125싱가포르달러를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들 금액은 2001.2.개정 후의 것이다.

34) 池田辰夫, 前掲論文 227面.

35) e@dr의 주소는 <http://www.e-adr.org.sg/eadr.html>이다. 2000.9.부터 시작한 전자분쟁처리제도는 많은 국가로부터 주목받고 있다(河村寛治,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オンラインADR制度について”, 『JCAジャーナル』第47巻第12號, 2000, 2面 以下)

36) 池田辰夫, 前掲論文 227面.

② IAC(Industrial Arbitration Court)

사법부 부설 ADR기구로서,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문제와 노동조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0.10.에 설립되었다. 고등법원의 기관은 아니지만, 고등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IAC로의 위임은 강제되지 않지만, 대통령의 공익에 배려한 지시가 있는 경우는 노사관계의 분쟁을 IAC에서의 중재에 위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교섭이나 조정의 회수나 기간은 다양하지만 중재의 심리는 통상 1일로 끝난다.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한다. 법원의 판단은 명령 또는 판결로만 이루어진다.³⁷⁾

4. 태국

(1) ADR제도의 개요

태국은 최근에 이르러 ADR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원래 분쟁해결에는 인맥이 중시되는 사회에 있어서, 또한 수수료 감각에서의 유력자의 이용도 보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중재이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체결되는 고액의 상사계약은 통상적으로 ADR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이나 정부기관이 관여하는 계약에서는 정부 측 법률고문은 항상 법무장관이므로 많은 사례에서 법무부중재기관(최근에는 사법부관할)이 선택되고 있다.

1987년 중재법은 2002년말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은 UNCITRAL모델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태국은 1958년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가입국에서 얻은 중재판단은 태국에서 집행가능하고 또한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태국에서 집행하는 경우 1987년 중재법 34조에 기하여 태국의 법원에 제소한다. 질차는 통상 2-4개월 걸린다.³⁸⁾

(2) 주요한 ADR기관

1) 법원 외의 주요 ADR

중재·조정을 담당하는 '사법부소관중재기관'(이전에는 법무부소관)은 가장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재센터이다. 1990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1건의 건설관계 사례가 있었을 뿐이었지만, 1999년에는 100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사건은 제1심의 경우 2000년에 약 85만건으로, 압도적인 사법우위를 보이고 있다.

태국에 있어서의 중재는 재판보다 상당히 코스트가 높다. 태국의 재판비용은 분쟁금액의 2.5%로 고정되어 있고, 20만바트가 상한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중재에서는 중재인 보수에 따라서 다르고 태국의 ADR시장에서는 중재인에게 적어도 바트로 7자리수의 금액을

37) 上掲論文, 227面.

38) 池田辰夫, 前掲論文 228面.

지불하는 예가 드물지 않다. 조정이나 교섭은 재판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³⁹⁾

2) 법원부설 ADR

‘법원부설 조정’의 영역은 태국법은 우리나라 법과도 비슷하다. 최근의 민사소송법 20조의 개정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조정과정에서 ‘특별회’를 설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5. 말레이시아

(1) ADR제도의 개요

말레이시아의 ADR제도는 각 전문분야별 분쟁해결기관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즉 노동분쟁조정을 위한 노동법원, 공공서비스심판원, 소비자소송심판원, 소득세특별위원제도, 보험조정국, 은행조정국 등 금융분쟁조정기구, 저작권심판원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해결제도가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관과 더불어 국제중재센터와 변호사회중재센터, 가정법원 등을 중심으로 ADR의 활용방안이 일찍부터 모색되어 왔다. 그리고 변호사의 대폭적 증가도 ADR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8년에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지역중재센터는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전문중재인이 육성되는 등 아시아지역 중재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⁴⁰⁾

말레이시아에서의 ADR은 주로 조정(mediation 또는 conciliation)을 의미한다. 조정(mediation)은 실제 활용도가 낮는데, 일반인들은 조정절차를 일종의 협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은 또한 구속력이 없다면 조정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처음부터 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⁴¹⁾ 말레이시아는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한 ADR의 홍보와 함께 조정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상당수의 조정인을 양성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조정조항은 중재의 사전단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당해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재절차를 중지시키는 효력을 갖게 된다.⁴²⁾

말레이시아의 중재제도는 1952년에 제정된 중재법(the Arbitration Act)과 1980년 고등법원규칙 69호 명령,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에 의해 채택된 UNCITRAL 규정, 1972년

39) 上掲論文, 229面.

40) 류창호,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50-62면 참조 ; Shariafah Suhana Syed Ahmad/Roy Rajasingham,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Malaysi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02, p.6.

41) 이계우, “아시아지역의 ADR”, 「중재」 304호, 대한상사중재원, 2002. 6, 97면.

42) 류창호, 전제논문, 51-52면.

말레이시아 고무거래 및 허가 위원회법, 말레이시아 고무거래 및 허가규칙에 의해 제정된 특별중재법원의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⁴³⁾ 말레이시아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중재재정의 승인과 집행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으로 '1958년 외국판결의 상호집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ICC)규정, UNCITRAL규정과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규정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적용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들은 계약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⁴⁴⁾

조정(mediation)에 의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관한 문제이다. 다만 무역분쟁에 관한 조정(conciliation)은 1967년 산업관련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조정 등 분쟁해결에 관한 UNCITRAL규칙은 산업관련법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사항에서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⁴⁵⁾ 조정이나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에 의한 집행은 대체로 이러한 절차의 결과에 도달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다. 조정 등 기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는 중재절차와 병행될 수 있다.⁴⁶⁾

(2) 주요한 ADR기관

1)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지역중재센터

이 중재센터는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8년 쿠알라룸푸르에 설치되었다. 이 센터는 이 나라 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대외 무역·상업 및 투자부문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센터의 중재규칙(Rule for Arbitration)에 의하면,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는 원칙적으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인은 객관성·공평 및 정의에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련 거래관습, 당사자들의 영업관행 등을 주요 지침으로 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정인은 이를 당사자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을 기초로 조정인은 가능한 해결조건을 작성하게 된다.⁴⁷⁾

2) 말레이시아 보험조정국(The Insurance Mediation Bureau, IMB)

말레이시아 보험조정국은 보험소송이 급증되던 시점인 1992년에 설립되었다. IMB는 영국의 보험옴부즈만사무국(the British Insurance Ombudsman Bureau)을 모델로 한 것으로, 단순히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43) Timothy Siaw, *Doing Business in Asia* Vol. III 1st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51.

44) 류창호, 전계논문, 52면.

45) Sharfah Suhanah Syed Ahmad/Roy Rajasingham, *supra* note 40, pp.44-49.

46) Timothy Siaw, *supra* note 44, p.67.

47) 류창호, 전계논문, 56면 ; 장효상,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중재기구", 『중재』300호, 대한상사중재원, 2001.6, 37면.

만들어졌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해결되고, 편지에 의해서 절차가 시작할 수 있다. 절차는 전적으로 서신왕래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조정인의 결정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업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⁴⁸⁾

3) 은행조정국(The Banking Mediation Bureau)

은행조정국은 1997년 설립된 것으로, 그 구조는 IMB와 거의 유사하다. 은행조정국은 모든 은행, 금융회사, 상업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조정인은 금융업계 외부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다. 조정인은 고도한 요금부담, 오해하기 쉬운 광고, ATM입출금, 권한없는 신용카드와 보증인의 사용을 포함하는 분쟁들을 심문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은 보통은 2-3개월 내에 해결되고,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조정으로 다룰 수 없다. 사건은 서신으로도 개시될 수 있으나 조정인은 반드시 당사자를 대면하여야 한다. 조정의 결정은 신청인이 아닌 은행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절차는 유연하고, 증거법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⁴⁹⁾

4) 소비자분쟁심판원(Tribunal for Consumer Complaints)

소비자분쟁심판원은 1999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심판원의 구성원은 의장과 부의장 및 적어도 5인 이상의 법률전문가인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심판 전 절차는 단순하여, 소비자는 단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청구하고 정해진 요금을 내면된다.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 심판인은 이를 승인하고 기록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심판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분쟁해결에 대한 모든 합의와 심판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당사자를 구속하고, 이는 치안판사법원의 명령으로 간주된다. 심판원은 토지, 유언 또는 이민, 자선, 거래비밀 또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⁵⁰⁾

5) 기타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ADR기구로서는, 1967년 소득세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득세특별위원회(The 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⁵¹⁾ 1991년 저작권법(Copyright Act)에 의하여 설립된 저작권심판원(Copyright Tribunal)⁵²⁾ 등이 있다.

48) Sharifah Suhanah Syed Ahmad/Roy Rajasingham, supra note 40, p. 53.

49) 류창호, 전계논문, 57면 ; Ibid, pp. 53-54.

50) 상계논문, 57면 ; Ibid, pp. 54-55.

51)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류창호, 전계논문, 59면 ; Ibid, p.55-57.

52)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상계논문, 58면 ; Ibid, p.55.

6. 인도

(1) ADR제도의 개요

인도에서는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기 수세기 전부터 Panchayat 시스템이라 불리는 제도를 유지해 중재·조정제도를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다고 한다. 이 제도는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던 제도로서, 마을에서 일어난 분쟁을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가 해결하는 전통적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에서 이러한 전통적 분쟁해결절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 간에 일어난 분쟁에 빈번하게 적용되었다⁵³⁾.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이후, 중재 제도는 합법적인 ADR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고, 현재도 인도에서 중재는 ADR 제도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다.

인도는 1996년 UNICITRAL을 기초로 “중재와 화해에 관한 법(The India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of 1996, 이하 ‘1996년 법’이라 한다)”⁵⁴⁾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국제 협약을 받아들임으로서 국제적 동일기준을 중재분야에 적용하게 되었다.⁵⁵⁾ 또한 본 법은 사적 분쟁, 상사 분쟁, 그리고 국제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⁵⁶⁾ 1996년 Arbitration Act는 국내·국의 사건에 대한 중재, 외국결정에 대한 집행, 그리고 화해부분으로 나누어진다.⁵⁷⁾

1996년 법 이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률은 1940년 중재법, 1937년 조약과 협정에 관한 중재법 그리고 1961년 외국 결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져 있었는데,⁵⁸⁾ 중재를 포함한 ADR절차를 모두 다룬 1996년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법은 폐지되었다. 인도는 1923년 중재 규정에 관한 제네바 조약, 1927년 외국중재결정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정과 외국중재결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 협정에 가입되어 있다.⁵⁹⁾

1996년 법이 인도 법제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인도 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인도는 현대 세계경제 시스템에 맞는 경제구조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 개방의 폭을 확대하였다.⁶⁰⁾

53) Anil Xavier, Symposium: Mediation: Its Origin and Growth in India, 27 Hamline J. Pub. L. & Pol’y 275, 2006, p.275.

54) See India Adopts New Arbitration Law, Mealey’s Litig. Rep.: Int’l Arb. Rep.: Rep., Frb. 1996

55) See Update on Indian Arbitration: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rdinance, 1996, Mealey’s Int’l Arb. Rep., Nov. 1996.

56) Thakker & Thakker, Doing Business in Asia, Vol II, at Ind ¶70-101(Kluwer, 2005).

57) 인도 1996년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권영호, 「인도법」, 도서출판온누리, 2008, 249-255면 참조.

58) News, Arbitration in India: Laws, Procedures and Enforcement of Awards, Available at <http://member.aol.com/RTMMadaan1/arbitration.html>(last cisted Mar. 12, 2007)

59) 인도의 ADR에 대하여 자세히는, 박찬호, “인도의 사법제도와 소송의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60) Tracy S. Work, India Satisfies Its Jones for Arbitration: New Arbitration Law in India, 10 Transnat’l Law. 217, 1997, p.217 ; See Francine R. Frankel, India: The Waking Giant, Wash, Q. Autumm 1996, p. 129.

(2) 주요한 ADR기관

인도의 ADR기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도중재위원회(the India Council of Arbitration)를 들 수 있다. 중재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중재계약은 반드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인도중재위원회는 인도 국민(기업)과 외국인 간의 상사 계약에 “계약의 성립, 해설 또는 효과와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과 의견 차이는 인도 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인도 중재법에 따라 결정된 판단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도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규정을 따라 인도상공회의소(Indian Merchant's Chamber)도 이같은 권고를 하고 있고, 인도의 산업자원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인도 중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프로젝트에 중재관련 조항으로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⁶¹⁾

법원은 중재판정과정을 감독하고 개입할 폭넓은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재인과 당사자들은 중재판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들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에 의해서만 강제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내려져서 법원에 정식 제출된 이후에는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적 효력을 갖는다.⁶²⁾

7. 베트남

(1) ADR제도의 개요

중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과 국부창출이라는 국가목표를 향해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내적으로 시장경제질서의 요소를 대폭 도입하여 민간경제부문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종 법제 정비와 함께 사법개혁을 하고 있다.⁶³⁾ 베트남의 사법체계는 사법권의 독립성 취약, 판결의 실효성의 취약, ADR의 발달과 정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⁶⁴⁾

베트남은 시장경제로의 경제개혁으로 인하여 1990년대 말경에는 사업 분쟁의 유형이 더욱 다양화하고 복잡해졌으며, 새로운 형태의 분쟁, 즉 이른바 노사분쟁과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발생되었다. 국가경제의 전환과 상사분쟁의 형태 및 실질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사분쟁의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도 상사분쟁의 해결을

61) Thakker & Thakker, *Doing Business in Asia*, Vol II, at Ind ¶70-101(Kluwer, 2005).

62) 박찬호, *진개논문*, 108면.

63) 베트남의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Brain J.M. Quinn, *Vietnam's Continuing Legal Reform: Gaining Control Over the Courts*, 4 *Asian-Pacific L&Pol'y J.* 355, 참조.

64) 차세히는, 김치환, “베트남의 사법제도 개관”,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8. 참조.

위한 방법으로 협의, 조정, 중재 그리고 법원에 의한 ADR을 모색하고 있다.⁶⁵⁾

최근 환경관련 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과학기술환경부의 조사단 보고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환경보호법 위반 및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은 3,252건이었다.⁶⁶⁾ 이 같은 환경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행정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베트남에 있어서의 환경관련 분쟁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아시아 각국에서 특징으로 발견되는 ADR을 통해서 주로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법 시스템은 자본주의법체제로의 이행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⁶⁷⁾

(2) 주요한 ADR기관

1) 조정반

조정반(to hao giai)은 풀뿌리 지역단위에 있어서의 경미한 법률위반과 공민간의 소규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민에 적합한 조직을 설립한다는 헌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다. 조정반은 ①개인간의 불화, ②민사사건, 혼인·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③형사 또는 행정벌에 의해 처리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법규위반을 처리한다. 조정 결과, 합의가 된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지만, 이에는 기판력도 집행력도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인민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취득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⁶⁸⁾

2) 경제중재센터

경제중재센터는 1994년 정부의정 116-CP호에 의하여, 경제계약에 관한 분쟁, 회사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회사와 그 사원 사이, 회사의 사원간의 분쟁, 주식과 사채의 매매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재기관으로, 경제중재소라고도 불린다.

센터의 설립은 법무부장관의 동의와 성급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센터의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5년간이고 연장할 경우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 재판에 따르지 않을 때, 타방 당사자는 경제관련 분쟁해결의 절차에 따라서 관할권을 가진 인민재판소에 소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중재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고, 그 판단이 최종적이라고 하는 위의 정부의정상의 규정과 모순되어 비판받고 있다.⁶⁹⁾

65) 베트남 ADR제도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순태,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참조.

66) Institute of State and Law, National Centre for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Vietna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Vietnam,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02.3 참조.

67) 이순태, 전계논문, 82-89면 참조.

68) 이순태, 상계논문, 72면 ; 白石昌也編著, 『ベトナムの國家機構』, 明石書店, 2000, 138面.

69) 자세히는, 아시아법연구소·베트남국가법률연구원, 『베트남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한국의 경험과 베트남의 구상을 중심으로-, 2005, 174-177면 ; 白石昌也編著, 『上掲書』, 139-140面 참조.

3)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CA)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상공회의소에 소개하고, 외국당사자와의 매매계약, 투자, 여행, 국제운송, 국제보험, 기술이전, 국제신용·결제 등과 같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중재재판은 최종적인 것으로,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상소할 수 없다. 최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국내 경영(Kinh doanh)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는 위의 국내중재에 관해서는 경제중재센터와 경쟁관계에 있는 셈이다.⁷⁰⁾

Ⅲ. 각국 ADR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국가를 초월하는 ADR제도의 비교검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용어에 있어서 역사나 문화 등의 차이 때문에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도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한 과연 ADR이란 무엇인지, arbitration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하는 점과 관련하여 ADR의 본질문제와 결부된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각국 ADR제도의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ADR의 범위

ADR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자주적’ 분쟁해결이란 무엇인가 하는 ADR의 본질론과 관계된다.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향한 ‘자주적인’ 합의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재는 ADR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해결수단이어야 할 중재가 소송보다도 장기화하고 소송에 뒤떨어지는 대심절차로 보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⁷¹⁾ 중재가 재판과 가까운지 ADR로 분류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처분성’에 착안하여 결정해야 적절할 것이다.⁷²⁾ 국가에 따라 중재를 ADR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를 재판의 분쟁절차와는 별도로 논의하는 경향도 있지만,⁷³⁾ 아시아 국가들

70) 이순태, 전제논문, 73면 ; 白石昌也編著, 上掲書, 140面.

71) 인도네시아의 1999년 중재법에 있어서는 중재절차 중에서 alternative resolution settlement를 시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점에도, 소송과 중재의 동질성이 보이고, 당사자가 주장입증을 다한 후에 제3자가 법에 기초한 구속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양자는 공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2)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8面에서는 ADR을 조정형절차와 재단형절차로 나누고, 중재를 재단형절차로 구분하고 있다.

73) See Tracy S. Work, India Satisfies Its Jones for Arbitration: New Arbitration Law in India, 10 Transnat'l Law 217(1997); Thakker & Thakker, Dong Business in Asia, Vol II, at Ind ¶70-101 ~ ¶70-203(Kluwer, 2005).

은 대체로 ADR에 중재를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ADR의 대부분이 중재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재와 다른 ADR을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도 중재와 화해를 동일한 법률 속에서 다루고 있다.

2. 비용부담

각 국의 ADR제도를 소송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소송중심형의 국가와 ADR중심형의 국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는 소송제도 내지 사법부부설ADR제도에 수요자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이에 속한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소송이라고 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할 것도 없이, 국가는 수요자 부담을 적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송 집중에는 국고부담이 필연적이다. 후자는 소송지연에 대한 불만, 또는 사법 자체에의 불신에서 이를 회피하려는 흐름 가운데, ADR이 활성화될 보이는 것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ADR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아직도 긍정적·부정적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⁷⁴⁾ 요컨대 소송제도와 ADR확충의 균형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현상을 보면 대개 소송제도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ADR제도의 균형있는 발전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고 등에서 적절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⁷⁵⁾

3. ADR이용 촉진정책

각국은 대부분 사법제도 개혁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ADR이용 촉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이고 수요자나 ADR담당자 등 총비용(total cost) 면에서 ADR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ADR제도의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조정전치주의 예로서는, 중국의 노동중재전치주의가 있다. 베트남상법 239조 1항은 상사

74) 전병서의, 「대체적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12, 2면 ; 이상돈, “소송의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중앙대학교법학논문집, 1988, 208면 ; Owen M. Fiss, *Against Settlement*, 93 *Yale L. J.* 1073, 1984.

75) ADR의 비용부담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A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부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고부담은 직접부담과 간접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예로서,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국고부담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예로서는 민간ADR기구설립지원, ADR담당자의 책임육성, 독일의 변호사화해제도상 변호사보수에 있어서의 인센티브제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분쟁에 있어서 negotiation의 선행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정부인가를 받는 계약에서는 분쟁처리조항으로서 당해 국가의 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의 이용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가사조정에서는 폭넓은 조정정치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의 민사조정에서도 조정전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장래 아시아 국가간 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 ADR전치주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ADR의 비용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의 조정신청비용은 소송의 1/5 정도이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ADR이 일반적으로 꼭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변호사를 위한 ADR촉진정책으로, 독일에서는 연방변호사보수법에 의하여 보수면에서의 인센티브가 도입되고 있다. 절차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온라인ADR의 도입이나 절차의 약식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⁷⁶⁾

셋째로, ADR제도의 홍보와 정보제공의 문제이다. ADR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ADR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ADR에 대하여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소비자센터, 변호사회 등 국민의 제1차적인 접근지역에 항상 ADR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ADR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 상담창구에 ADR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⁷⁷⁾

4. 관의 적극적 역할

ADR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국의 ADR 이용건수는 소송 건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그나마 ADR 중에서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부설 ADR이다. 그것은 법원조정의 경우, 집행력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이지만, ADR시스템에 있어서도 법원 등의 관에 의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앞으로 다양한 민간주도형 ADR기구가 확충되어 ADR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IT를 받아들이고, 질 높은 ADR전문가의 양성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IT를 활용한 ADR보급은 이미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⁷⁸⁾

5. ADR의 특성과 집행력

ADR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DR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

76) 김상찬, “ADR의 이념과 개혁방향”, 『법과정책』 제10호,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04.8, 117면 ; 町村泰貴, “인터넷社會とADR(下)”, 『NBL』 690號, 2000, 47面.

77) 전병서 외, 전계연구보고서, 161면.

78) 여러 국가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町村泰貴, “인터넷社會とADR(上)”, 『NBL』 第689號, 2000, 6面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DR에 기초한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다만,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ADR에서 행해진 합의에 바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원칙상 곤란한 점도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법원이 관여하는 형태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⁹⁾

6. ADR담당자의 양성

ADR의 이용을 장려하여도, 수요자의 만족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되어 쓸모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ADR기관의 설립을 지원함과 아울러 ADR을 담당하는 mediator나 arbitrator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국제상사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중재기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KCAB, 싱가포르의 SIAC, 중국의 CIETAC, 태국의 법무부중재기구, 인도네시아의 BANI 등이 그것이다. 모두 상당수의 국제상사중재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mediation을 국제상사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기관도 있다. 우리나라의 KCAB는 중재 이외에 mediation을 메뉴의 하나로서 제공하고 있다. 중국, 싱가포르는 별개의 mediation center를 설치하고 있다. ADR기관에는 민·상사분쟁 전반을 취급하는 범용형기관 외에, 특정한 거래분야·분쟁유형만을 취급하는 특화형기관도 있다.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등에서는 양쪽 유형의 다양한 ADR기관이 준비되어 있다.

국제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인은 각국이 국내외의 국제거래 관련 실무가·교수를 중재인 후보자리스트에 올리고 있어, 담당자 양성의 문제는 절실하지는 않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일반상사분쟁에서의 mediation 등을 추진하려면 mediator에게 연수나 자격취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⁸⁰⁾ 인재양성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일본, 중국 등 포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잘 활용한다면 ADR전문가를 양성은 물론 ADR전문가의 연수기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7. ADR절차의 개선

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ADR의 장점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ADR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ADR의 문제점으로 우선 보전처분의 가부의 문제이다.

79)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167-168면 참조.

80) 池田辰夫, 前掲論文, 233面.

81) 김상찬, 前掲論文, 118면.

싱가포르 SIAC에는 가치분이나 가압류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상중재의 경우 중재전 보전처분이 가능하다. ADR절차 중의 보전처분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법원에서는 보전처분 심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를 어느 정도 확정하기 위한 신중성이 보다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역으로 국가에 따라서는 사법제도가 신뢰감이 결여되고 있다고 하면 사법에의 전면적 의존은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중재판정부 독자의 권한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 시효중단효의 문제이다. ADR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볼 때 ADR에 시효중단효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ADR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시효를 보호할 목적만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당사자사이에 조성되고 있던 우호적인 화해분위기를 깰 수도 있다. 결국 ADR에 시효중단효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용자는 안심하고 ADR을 개시·진행시킬 수 없고, ADR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⁸²⁾ 만약 mediation 중에 시효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다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 중에서 사건을 mediation에 회부해야 한다면 번거롭기만 할 것이다. ADR 자체에 의한 시효중단·정지효의 부여는 무용한 소송회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집행력의 문제이다. 중재판단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은 각국이 같이 인정하고 있고, 모두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문제가 적다.⁸³⁾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심사를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규정방식이나 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mediation을 통하여 얻어진 agreement 등은, 그 자체로 압류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집행력은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사법부부설 mediation 내지 conciliation의 경우는 별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onciliation의 official record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⁸⁴⁾

82) 전병서의, 전제연구보고서, 154면 ; 김상찬, 전제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164면 ; 山本和彦, “ADR基本法に關する一試論-ADRの紛争解決機能の強化に向けて”, 「ジュリスト」 1207號, 2001.9, 29面.

83) 국가에 따라서는 국제상사중재판단의 채무명의화가 운용에 있어서 거절된다고 한다. 국제프로젝트·비즈니스에서는 국가 리스크의 하나로서, 뉴욕협약에의 비준의 유무를 문제로 한다(齊藤祥男·絹卷康史編著, 「國際プロジェクト・ビジネス」, 文眞堂, 2001).

84)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조정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558호)에 의하여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부를 불문하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를 송달 또는 교부받은 당사자는 그 정본을 조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ADR에 의한 해결결과가 재판상의 화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부여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의 조정의 효력”, 「법조」 53권 6호, 법조협회, 2004.6, 66면)

IV. 맺음말

아시아의 주요국가 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UNCITRAL모델법이 각국에서 잇달아 채용되고 있는 것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국제표준이 급속도로 국내규범화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전제로 국제(상사)중재와 국내중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칙화하고, 양자를 포함한 통일법전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독일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일본법 등이 이미 선행되고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각국의 사법제도와 ADR의 현상은 다양하므로 사법과의 역할분담은 각국의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ADR국내규범에 관해서는 좀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재는 아시아 지역 내에 있어서 비교적 마찰이 적고 공통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는 UNCITRAL의 모델중재법에 준거한 중재법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의 ADR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재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재법의 정비에 의한 국제상사 중재제도의 발전이 긴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ADR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다만 그것이 소송제도의 불만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혹은 강한 정부·법원의 선도적 역할에 의지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제도의 총체적인 개혁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그 배경이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여기에서 분쟁해결에 위한 에너지·코스트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이 ADR론에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논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ADR의 발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은 틀림없이 금후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국가간 거래의 활성화·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의 아시아 주요국가의 ADR제도의 비교연구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보다 면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재양성은 물론, 중재인의 상호교류 등을 포함한 아시아에 적합한 모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제12 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8.
- 김상찬, “일본의 ADR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 _____,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김태한, “미국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중재연구』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류창호,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박찬호, “인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아시아법연구소·베트남국가법률연구원, 『베트남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한국의 경험과 베트남의 구상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연구소, 2005.

양병희, “독일에서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 『인권과 정의』215호, 대한변호사회, 1994.7.

_____,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민사소송』제1권, 한국민사소송학회, 1988.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그 도입방안”, 『민사소송』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5.

_____, “ADR의 발전과 법원의 조정의 효력”, 『법조』53권 6호, 법조협회, 2004.6.

이순태,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이재우, “아시아지역의 ADR”, 『중재』304호, 대한상사중재원, 2002. 6.

장효상,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중재기구”, 『중재』300호, 대한상사중재원, 2001.6.

전병서 외, “대체적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05.12.

정영수, “일본의 ADR법에 관한 소개”, 『중앙법학』 제7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5.2.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제11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5.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5.

최환용, “인도네시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3,

허 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ADR)”, 『민사판례연구』제14권, 민사판례연구회, 1992.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小島武司, 『裁判外紛争處理と法の支配』, 有斐閣, 2000.

早川吉尙 外, 『ADRの基本的視座』, 不磨書房, 2004.

內堀宏達, “裁判外紛争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概要”, 『法律のひろば』, きょう

- せい, 2005.4.
- 山本和彦, “日本におけるADRの現状と課題”, 「JCAジャーナル」, 543號, 2002.
- _____,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意義と今後の課題”, 「法律のひろば」, 2005.4.
- 山田文, “ADR法制定と理論的課題”, 「法律時報」第77卷 第2號, 日本評論社, 2005.2.
- 小島武司, “司法制度改革 ADR”, 「ジュリスト」1207號, 2001.
- 町村泰貴, “インターネット社会とADR(上)”, 「NBL」第689號, 2000.
- 齊藤祥男・絹巻康史編著, 「国際プロジェクト・ビジネス」, 文眞堂, 2001.
- 朱建林, “中国の 仲裁-花盛り”, 「国際商事法務」第29卷 第2號, 2001.
- 池田辰夫, “アジア・太平洋諸国におけるADR制度の現状と展望”, 「ADRの実際と理論Ⅱ」中央大學出版部, 2005.
- 河村寛治,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オンラインADR制度について”, 「JCAジャーナル」第47卷 第12號, 2000.
- Anil Xavier, *Symposium: Mediation: Its Origin and Growth in India*, 27 Hamline J. Pub. L. & Pol’y 275, 2006.
- Henry P. De Vrie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Contractual Substitute for National Courts*, 57 Tul. L. Rev. 42, 1982.
- Hiknahanto Juwana,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Indonesia*, IDE Asian Law Series No.21, IDE-JETRO, 2003.
- Institute of State and Law, National Centre for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Vietna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Vietnam*,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02.3.
- Shariafah Suhana Syed Ahmad/Mary George,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Malaysi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2002.
- Thakker & Thakker, *Dong Business in Asia*, Vol II, at Ind ¶70-101- ¶70-203, 2005.
- Timothy Siaw, *Doing Business in Asia* Vol. III 1st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Tracy S. Work, *India Satisfies Its Jones for Arbitration: New Arbitration Law in India*, 10 Transnat’l Law 217, 1997.
- William K. Slate II, *International Arbitration: Do Institutions Make a Difference?*, 31 Wake Forest L. Rev. 41, 1996.

ABSTRACT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ADR - Focusing on Major Asian Countries -

Sang-Chan Kim

Nowaday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erms of re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is in the spotlight as a try to overcome the limits of a lawsuit as well as the judicial reform. Since many articles have studied ADR in America, Germany, Japan and the like which developed the system in advance, this article compares ADR in major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Malaysia, India, and Vietnam etc. introducing ADR organizations as well.

On the matter of vigorous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Asian countries currently, it seems inevitable not to have consequential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Thus it will be very useful to know the la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This article is written to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in Asian countries and provide research materials to develop ADR in Korea by comparing the ones in major Asian countries. In addi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ADR in Asian countries should be continued to find the model which best fits in Asia as well as to nurture talent.

Key Words : ADR, comparative legal study, Asia, China,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Malaysia, India, Vietnam